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비조직인증 발급 근거 마련〉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59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59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비조직인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97조)	3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221985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7. 9.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청 소속 119항공정비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항공기의 정비를 수행하거나 정비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항공기 제작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119항공정비실과 같은 국가기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이므로 상업용 항공기정비업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해 국가기관이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자체 정비를 수행하더라도 현행법상 무자격자에 의한 정비 행위로 간주되어 수행한 정비행위의 적법성과 감항성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정비체계구축

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보유한 항공기(소방, 경찰 등 국가기관 등 항공기)의 유지보수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하고자 할 때 현행법상의 상용 등록 요건 및 결격사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되,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정비조직인증 기준은 동일하게 준수하여 인증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재난대응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7조).

Ⅲ. 검토의견

1.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비조직인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97조)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 및 군용, 경찰용, 세관용 항공기에 대하여 정비 등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 정비조직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① (생략)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¹⁾ 및 군용, 경찰용, 세관용 항공기에 대하여 제1항의 정비 등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2조 및 제43조²⁾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등의 범위·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조직인증서와 함께 해당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u>	<u>③ ----- ----- ----- ----- -----항공기정비업자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u>
<u>③ (생략)</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항공사업법」

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①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정비사 1명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3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정비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기정비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항공기정비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④ 항공기정비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⑤ 항공기정비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⑥ 항공기정비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⑦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항공기정비업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4호의2, 제5호 및 제13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32조는 항공기등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자체 정비를 제외하고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97조³⁾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부품등의 정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정비조직인증기준⁴⁾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는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

3)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등의 범위·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조직인증서와 함께 해당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가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정비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조직인증기준”이란 법 제97조에 따라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자재, 자료, 인력 및 운영준칙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6장 ‘정비조직의 인증’ 중 6.3부터 6.5까지를 말한다.

색·구조,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소방청과 산림청이 담당하는 업무로서 소방청은 2021년 5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⁵⁾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 97조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부품 등의 정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로 정비조직인증 발급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방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정비조직인증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임.

현재,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자체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반면,⁶⁾ 자체 정비를 할 수 없는 각 광역지방단체 소

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기록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실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실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②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속 소방본부는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소속 항공기를 중앙119 구조본부나 항공기정비업자 등에게 항공기 정비를 위탁하고 있음.⁷⁾

이처럼 정비조직인증을 발급받지 못한 중앙행정기관이 정비위탁을 받아 항공기를 정비하는 것은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고 항공기정비업자 등이 항공기를 정비하여 국가예산 지출이 증대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119항공정비실 운영을 위해 「항공안전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 보완을 요구한 바 있음.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둘째, 119항공정비실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소방헬기의 운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행 「항공안전법」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제작자만이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2조제2항), ‘국가기관등항공기’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소방헬기를 소방청의 119항공정비실에서 정비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 및 군용, 경찰용, 세관용 항공기에 대하여 정비 등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 정비조

7) 소방청은 현행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인 119항공정비실은 지방자치단체장 소유 소방 항공기를 위탁받아 정비 수행이 가능한 정비조직 인증의 대상이 아니며, 소방 항공기 위탁 정비 자격은 제작사 또는 정비조직 승인자로 한정된다고 설명함

직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기관등의 항공기를 중앙행정기관이 불법 위탁 정비하는 위법 상황을 해소하고, 민간 항공기 정비 위탁으로 인한 국가예산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⁸⁾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도 개정안에 따른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현행법 제1조(목적)·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⁹⁾ 및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2조(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8)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기기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 1) 비행기
- 2) 회전익항공기
- 3) 비행선
- 4) 활공기(滑空機)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이하 생략)

9) 「항공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나.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청은 119항공정비실을 갖추어 시·도(타 기관) 소방헬기를 정비할 계획으로 정비조직인증 취득이 필요한 상황인 바, 소방청은 공공·비영리 행정기관이므로 정비조직인증 시 상업적 요건은 배제하되 안전 요건은 준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산림청과 같이 타 기관 항공기를 정비하지 않고 자체 항공기만 정비하는 경우나 소방청이 자체 항공기를 정비할 때도 불필요하게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2) 소방청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어 정비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 감항성을 확보하고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대부분 외주정비에 의존하던 소방항공기 운영시스템을 변화하여 가동률을 향상하고 운영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580